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6월 19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6월 28일

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옛 전통나루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콘텐츠로 개발하고, “쉼의 공간(休), 즐길의 공간(樂), 교류와 소통의 공간(痛)”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레저 스포츠 체험공간을(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건 물

- 면 적 : 3동 900m²(체험관, 주막촌, 보부상 및 사공 숙소)
- 예정가격 : 2,99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기타(나루터) : 2개소 40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비산나루 (비산동 산호대교 인근)
- 동락나루 (임수동 구미대교 인근)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성 수

○ 본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과 기타 재산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은

-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동락나루 부근에 체험관, 주막촌, 보부상 및 사공 숙소 등 3개동 900m²와 비산나루, 동락나루를 신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제162회 임시회시 상정 보류된 건으로 나루터조성으로 낙동강 관광을 상징하는 핵심콘텐츠로 개발하여 향후 낙동강 시대의 관광산업 선점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취득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